

#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

- 제정 2003년 5월 9일 조례 제 741호
- 개정 2007년 4월 23일 조례 제 918호
- 개정 2008년 6월 13일 조례 제 975호  
(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 
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 
정비에 관한 조례)
- 일부개정 2012년 11월 12일 조례 제1262호
- 타법규개정 2013년 1월 12일 조례 제1267호  
(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)
- 일부개정 2013년 4월 2일 조례 제1277호
- 전부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40호
-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 
(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)
-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5호  
(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)
- 일부개정 2020년 7월 10일 조례 제1804호
-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 
(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)
- 일부개정 2022년 5월 13일 조례 제1991호
- 일부개정 2022년 12월 22일 조례 제2025호
- 일부개정 2024년 2월 8일 조례 제2144호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육”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어린이집”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##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

**제3조(위원회의 설치)**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4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
3.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
4.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5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 5. 13>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7. 10>

1.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
2. 보육전문가
3. 관계 공무원
4. 어린이집의 원장

5. 보육교사 대표

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시장이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**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육전문가 위원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2. 5. 13>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2.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본인이 원하는 경우

**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을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위원의 수당)**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

**제10조(센터의 설치)** ① 법 제7조에 따라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

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센터의 설치 기준은 영 제12조에 따른다.

**제11조(센터의 기능)**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8. 12. 26, 2020. 7. 10>

1.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
2.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
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4. 어린이집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
5. 아이사랑놀이터의 운영 및 영유아의 체험, 놀이공간 제공
6. 「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장난감대여점의 관리 운영
7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
8. 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
9.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
10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센터는 시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한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**제12조(센터의 인력구성)**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.

②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는 센터의 장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,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센터의 장,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따른다.

**제13조(운영의 위탁)**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. 다만,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 제26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공개 경쟁의 방법에 의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」(이하

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39조의3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.

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, 그 밖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은 영 제26조의2를 따른다. <개정 2020. 7. 10>

**제14조(위탁의 취소)**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15조(센터의 운영위원회)** 센터의 장은 센터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## 제4장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

**제16조(시립어린이집의 설치)**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급상황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·휴일·야간·다문화 아동 등 취약보육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보육교직원의 임면)** ① 수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대표 또는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임용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의 보육교직원은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.

**제18조(운영의 위탁)**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.

③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따른다.

**제19조(위탁기간 및 위탁계약)**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하고, 기존 수탁자의 재위탁은 한차례만 3년 이내로 한다.

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으로 위원회가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다. <단서삭제 2022. 12. 22>

③ 기부채납일 경우 위수탁계약서 상의 위탁기간으로 한다.

④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, 위탁 계약 시 시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**제20조(위탁의 취소)**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## 제5장 어린이집 지도·점검

**제21조(지도와 명령)**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.

**제22조(사전통지)**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대상자에게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민원제보 등에 의한 수시(긴급)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의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.

**제23조(지도점검의 예외)** 다음 각 호의 우수 어린이집에 대하여 1년간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다만, 민원제보 등 문제가 발생시에는 점검하여야 한다.

1. 삭제 <2020. 7. 10>
2. 선행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, 급·간식, 위생, 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

## 제6장 비용의 보조 등

**제24조(비용의 보조)**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10, 2022. 5. 13, 2024. 2. 8>

1. 법 등 관계 법령과 보육소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정한 사업비
2.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입학금 및 기타경비 일부
3. 어린이집 개·보수비 및 시립어린이집의 설치, 증·개축비
4. 시립어린이집,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
5. 어린이집 보육교사 담임수당 및 장기근속수당
6.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용 및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용
7. 어린이집 보조교사·연장교사·대체조리사 인건비
8. 어린이집 급·간식비
9. 교재·교구비
10. 센터 설치 및 운영비
11.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및 운영비
12. 어린이집 냉·난방비
13. 공공형·평가제 등 우수어린이집에 대한 지원
14. 취약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15.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 지원

**제25조(보조금 정산)**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보조금 관련된 사항은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**제26조(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)**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**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
2.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2.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
3.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

③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28조(준용규정)** 영유아보육과 센터 및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의 위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, 영, 시행규칙, 보육사업 지침, 「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을 준용한다. <개정 2016. 7. 19, 2021. 12. 23>

**제2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 <2015. 11. 16 조례 제1440호 전부개정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.

**부칙** <2016. 7. 19 조례 제1501호,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생략**

**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⑱ 까지 생략

⑳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 중 “「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㉑ 부터 ㉔ 까지 생략

**부칙** <2018. 12. 26 조례 제1695호,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생략

**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6호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6. 「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장난감대여점의 관리 운영”

**부칙** <2020. 7. 10 조례 제1804호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)**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** <2021. 12. 23 조례 제1952호,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**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③0 까지 생략

③1 「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 중 “「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”를 “「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③2 부터 ⑤4 까지 생략

**제4조** 생략

**부칙** <2022. 5. 13 조례 제199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22. 12. 22 조례 제202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

**부칙** 〈2024. 2. 8 조례 제2144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